

## 오산시의회의원윤리에관한규정

제정 1991년 4월 16일 의회훈령 제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오산시의회의원(이하 “오산시의원”이라 한다)의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공익우선의 의무)** 오산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3조(성실의 의무)** 오산시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4조(청렴의 의무)** 오산시의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품위유지의 의무)** 오산시의원은 공사생활에 있어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친절 공정의 의무)** 오산시의원은 시민전체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7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199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